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 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6.30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2.7.4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1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2.7.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김정보)

가. 제안 이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3.8 법률 제4364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91.9.9 총리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폐관31824-

196(92.3.4)호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함.

나. 주요 골자

0. 분뇨의 수집, 운반 기준(제2조)

0. 정화조의 내부 청소 기준(제4조)

0.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대행 기준(제5조)

0. 수수료의 부과, 징수기준(제8조)
0. 분뇨관련 영업 허가 기준(제15조)
0. 과태료 부과 기준(제18조)
0.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부칙 제2조)
0.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부칙 제3조)
0.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부칙 제4조)

3. 전문위원 겸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0. 지금까지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수, 분뇨, 축산 폐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91년 3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 관한법률의 제정과 같은 3월 부산시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임.
0.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최근 우리 정부및 범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업무중 일부분으로서, 일찌기 일선행정기관인 기초 자치단체에서, 법률제정에 따라 즉시 지역 실정에 알맞는 조례를 제정 하여 원활한 청소 행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케 된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0. 첫째, 본 조례안의 제2조에서 분뇨의 수집, 운반시 효율적으로 운반키 위해 일정별로 정하여 분뇨, 수집 운반한다는 것은 계획성 및 일관성이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0. 둘째, 제9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분할 정수시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정수한다는 것은 수수료의 정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이는 주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민 관련 사항으로서 반드시 시행전에 타당성등 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후 시행되어야 하며,
0. 세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것은 물론, 업체의 난립 방지와 관리면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본 내용에 의해 허가받은 종전업체가 정수가 되면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해볼때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지며, 정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정경화 의원	청소 과장 김정보	'기존 3개 업체가 계약을 만료 할시, 반드시 기존업체와 계약 하지 않고 타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지 설명 요망'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어느 업체든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음.'
이인곤 의원	"	'남구를 제외한 타구청의 정수 설명 요망'	'정수는 강서구 1개, 타구는 2개임.'

	청소 과장 김정보	'기존업자의 차량 증차는 가능 한지, 그리고 증차 계획은 있는지 설명 요망	'차량 숫자를 살펴보면 삼정 6대, 대연정화 6대, 금정정화 6대 총 18대이며 물량이 많아 지면 증차도록 하겠음. (기존업자의 증차는 가능함)
여성준 의원	"	'정화조 청소를 대행업체가 아닌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 할 수 있는지 설명 요망	'주민복지 차원과 예산면에서는 현재와 같이 대행업체가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나, 이 문제등을 내무부 등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5조 제3항에 2호, 3호에서 처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구에서도 처분받은 업체가 있는지 설명 요망	'현재까지 처분받은 사실은 없음.
강정화 의원	"	'남구 정화조 설치는 전체 분뇨증 명 %인지 설명 요망	'정화조 25,025개, 자체식 19,382개로 전체 44,407증 25,025개가 되므로 56.3%임.
		'구에서 비정상 가동 정화조 관련 주민 신고등 행정적 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요망	'건물 신축 허가시,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들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받고 있고, 업자들이 청소를 하는 중 수시 발견되면 신고를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통·반장 회의등 을 통한 주민 개도에 앞장 서고 있음. '앞으로 계획을 정하여 집집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빠진집을 찾아 처리도록 하겠음.

강정화 의원	청소 과장 김정보	<p>'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주민들이 잘 몰라 업자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요망'</p> <p>'수수료 부담시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운영하면 강제 징수의 느낌이 드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p>	<p>'업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수거 차량에 요율표를 붙이는 등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도록 적극 노력하겠다.'</p> <p>'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와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검토한 후 반응이 좋으면 시행함이 타당함.'</p>
이수종 의원	청소 과장 김정보	'정화조 설치할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정화조만 별도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설명 요망'	'현재 정화조만 별도로 준공 검사하는 어떤 규정이 없음.'
최진동 의원	"	'부산시 조례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몇건에 얼마 부과했는지 설명 요망'	<p>'작년 11-12월에 걸쳐 정화조에 대하여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자진신고기간에 총 219건을 추가 신고받아서 지금 전산관리중에 있으며, 비정상 가동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67건에 약 1,600만원을 부과하였음.'</p>

5. 토론 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